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서비스계약 목적	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
계약기간	이용 시작일 ~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
계약해지	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	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급여기준 및 수가와 같음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(보호자)는 매월 실비 납부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(보호자)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함
신원인수인 권리	①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기관에 요청에 따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
배상책임 보험	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 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함

